

**<별지 제7호> <개정 2014.12.12., 2021.10.13.>
분할합병 승인신청서**

분할합병 전 당사회사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분할합병 후 존속회사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분할합병 후 신설회사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
■ 첨부서류

1.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1부
2. 분할 후 존속하거나 분할된 법인을 흡수한 법인의 정관변경(안) 또는 분할신설 법인의 정관제정(안) 각 1부
3.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
4. 분할합병으로 변경될 업무범위 및 재산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
5.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 계산서(사업전략,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, 조직구조 등 포함) 1부
(분할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)
6. 분할합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
7. 분할합병계획서 및 분할합병의 이유·분할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
8. 분할 합병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·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
9.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
10.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
11. 투자자·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
12. 당해 각 회사의 분할합병 전·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
13.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
(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)
14. 분할합병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
15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1항제1호에 따라
분할합병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